

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9.29.(화) 연합뉴스, “실업급여 3차례 이상 반복수급 11.3만명...지급액 연 6천억원”

뉴스, “실업급여 3회 이상 수령자 11만명 ↑ ...5회 이상도 1만 5천명”

2. 설명 내용

- 고용보험 가입자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,
 - 납부된 보험료로 구성된 재원을 토대로 구직자들에게 동일한 요건 및 기준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있음
- '25년 기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반복수급액(6천억원)은 전체 수급액(12.4조원)의 4.9%
 - 반복수급은 고용안정성이 낮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 구조*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
- * 우리나라의 임시직(기간제·파견 근로자 등) 비율은 26%로, '20년 기준 OECD 국가 중 2위(OECD 2022 한국 경제보고서)
- 실제 반복수급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, 60세 이상 고령층(36.5%)과 월 소득 300만원 미만의 수급자(65.1%) 비중이 높고, 업종별로는 공공 일자리 등 공공행정(22.4%) 비중이 높음

- 그간 정부는 반복수급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음
 - '25.3월에는 수급 초기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 반복수급자의 실업인정 주기를 단축하고(4주 → 2주), 실업인정 회차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 대면상담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음
 - '26.3월에는 반복수급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60~64세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던 자원봉사, 단기취업특강 등 단순활동 인정 횟수를 최대 2회로 제한했음
- 아울러, 지난 9.1. 반복수급자를 포함한 전체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「실업급여 제도개편 방안」을 발표했음
 -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조정(주 7 → 6일)하여, 구직급여와 최저임금 수령액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, 월 수급액을 20만원 이상 조정함으로써 수급자들의 재취업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
- 정부는 이번 제도개편과 함께, 지난 8. 20. 발표한 「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」을 통해 수급자들의 허위·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
 - 취업활동 마일리지 제도 도입, 반복 수급자 등에 대한 전담 상담사 배치 등을 통해 실질적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
- 또한,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 및 고용서비스 강화와 함께,
 - 불가피한 반복수급을 유발하는 노동시장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고,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음

담당 부서	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	책임자	과 장	손성길 (044-202-7368)
		담당자	사무관	박채원 (044-202-7909)